

공증인법 개정에 부쳐

노 승 행

대한공증협회장

입법예고 이후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다듬어진 공증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에 발의되어, 2009년 1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지 하루만인 1월 13일 전격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안의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다.

1962년 법률 제정 이후 근 5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전면개정과 다름없는 법률을 개정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법안 다듬기에 나섰던 법무부나 이를 최종 심사한 국회나 모두 우리나라 공증제도와 공증인들의 현실, 그리고 협회에 대한 이해 부족이 남아 있는 것 같아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은 우선 공증인(인가공증인 포함)의 5년 임기제 규정을 존속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공증인에 대한 임기가 없다는 점을 볼 때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제도이고, 공증인의 직무적 전문성 구축에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 저해 및 인가공증인의 경우 기득권 침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공증인의 연령제한 규정 도입도 1970년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의 제정으로 변호사겸업공증제도가 출범하게 되면서 폐지된 종전의 정년제도를 공증인제도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부활시킨 것으로서, 연령제한규정이 다시 과거로 회귀한 것은 전문직 자격자에 대한 부당한 연령규제와 차별이라는 논란으로 남게 되었다.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정확하고 신중하지 못한 공증사무 수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공증의 신뢰가 침해되고, 공증인의 직무에 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되어 다른 공무원처럼 정년제의 적용을 받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힌 법률안 개정이유는 참으로 안타깝다 할 것이다. 40여 년에 걸친 변호사겸업공증제도를 통해 현재는 고령이 된 공증인들을 포함한 모든 공증업무 종사자들이 이룩해 온 공증업무 직무수행의 적정성, 전문성 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이를 연령이라는 사유로 규제한 것은 심히 부당한 법률 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협회의 조직기구에 대한 이해부족을 갖고 있다. 전국의 공증인가 사무소, 즉 회원이 400여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 중 10명 이내의 상임이사 외에 50명 이내의

이사를 두는 것은 협회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며,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사들을 위한 의결기구인 별도 이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어 개정법률에 규정된 운영 위원회와 중복되는 옥상옥의 기구를 형성하게끔 되어 있다.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지방회가 조직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총회도 대의원총회로 규정하였는데, 개정법률에 의하면 임원인 50명 이내의 이사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기 위한 상당수의 운영위원, 총회 구성을 위한 대의원을 두게됨으로써, 전체 회원 상당수를 임원 또는 운영위원, 대의원으로 선출하게 되고, 이사와 운영위원, 대의원의 중복선출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외에도 정관인증취급 공증인 규정 삭제,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 협회의 연수의무보고 및 총회결의사항 보고의무 문제, 참여인결격자 문제, 선서인증 별칙조항 삭제 문제 등 개정 법률에 대한 아쉬움이 여러 곳에 남는다.

그동안 공증협회에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차 입안부처와 국회에 전달(進達)한 바 있음에도 협회의 의견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의 의결절차가 전격 처리된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선진 공증제도 도입 등의 여러 가지 전향적인 부분도 있으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공증업무가 어떻게 보면 사법의 가장 기초이자 전문분야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고, 그 법의 시행 주체들로 하여금 얼마나 충실하게 적용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냐가 핵심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은 이같은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인가 및 감독권자에 대한 통제권한 부여나 역규제만을 고려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실입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덧붙여 현재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과 별도로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관 및 의사록 인증 면제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566호)과 공증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564호)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개정안들의 경우도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무분별한 회사설립 남발과 부실회사 설립을 방치하게 되어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적 안정성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등기신청과정에서 등기소의 업무부담을 늘려 도리어 신속한 회사설립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공증은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가야 하고, 이들이 공증인을 대면하면 당면한 법률적 문제를 손쉽게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예상되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편안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 주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은 이미 활 시위를 떠났지만 위의 개정안들만 큼은 국회에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규제를 위한 법안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실한 심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